산업통상자원부	**보 도 자 료**	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4월 28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인터넷·방송·통신은 심의위 종료(4.27일, 16:30 예정)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
(심의 결과에 따라 자료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.)

배포일시	2020. 4. 27.(월)	담당부서	산업기술정책과 규제샌드박스팀
담당과장	안세진 과장(044-203-4510) 권기만 팀장(044-203-4520)	담 당 자	홍석민 사무관(044-203-4512) 신상훈 사무관(044-203-4523)

영양제도 먹기 쉽게 소량 포장돼 정기 배송된다!

- 2020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‥생활밀착형 규제 샌드박스 과제 승인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**4.27(월) '20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**를 개최하고,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·판매, 수소저장용 고압·대용량 복합 재료용기 충전·운송, '정수·냉수·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' 등 **12건의 안건을 상정**하였다.

○ 심의위 개회에 앞서서는 규제특례심의위 민간위원 신규 위촉*, 규제 수리(Repair) 워킹그룹** 발족 관련 **위촉장 수여 행사**도 이루어졌다.

* 신규 민간위원 : 이학성(LS일렉트릭 전력시험기술원 원장), 박현섭(티로보틱스 본부장)
** 교수·로펌·기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 중심 구성 → 성공적인 실증과제 대해 법령 등 규제개선(안) 마련 → 규제부처에 전달

□ 이번 심의위를 통해 **실증특례 10건, 임시허가 1건, 적극행정 1건**의 과제가 추가 의결됨에 따라,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('19.1.17) 이후 **누적 51건의 융합 신제품·서비스**에 대한 **규제 애로**를 **해소**하였다.

*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등 실적 : 실증특례 32건, 임시허가 6건, 적극행정 13건

<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>

○ **일시·장소** : '20.4.27(월) 14:00,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
○ **참석자** : 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
○ **안 건** : 실증특례 10건, 임시허가 1건, 적극행정 1건
- (실증특례) ①~⑦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·판매 7건(아모레퍼시픽 등 7개사)
⑧ 수소저장용 고압·대용량 복합재료 용기 충전·운송(엔케이)
⑨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(돔아일랜드)
⑩ 부동산 창문 활용 디지털 사이니지(부동산포스)
- (임시허가) ⑪ 정수·냉수·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(삼성전자)
- (적극행정) ⑫ 소수력 발전 시스템(동해기연)

【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】

[안건1~7]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·판매 : 실증특례

□ **(신청 내용)** 아모레퍼시픽㈜, 풀무원건강생활㈜, 한국암웨이㈜, 한국허벌라이프㈜, ㈜빅썸, 코스맥스엔비티㈜, ㈜모노랩스 등 7개사는 각각 '**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·판매**'에 대한 **실증특례를 신청**하였다.

○ 이번 실증은 설문 등 다양한 방식*을 통해 **소비자의 식습관·생활습관을 분석**하여,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**추천, 소분**·판매하는 서비스**를 주요내용으로 한다.

* 설문, 개인용 의료기기 자가 측정 결과 등을 활용
** 여러 가지 제품을 1회~수회 섭취 분량으로 나누어 담아 재포장

<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·판매 서비스 >



□ **(현행 규제)** 「**건강기능식품법**」상 **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**는 건강기능식품을 **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**하다.

□ (**심의 결과**) 심의위원회는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, 웰니스 기기 확산 등에 따른 **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수요를 충족**하고,

○ 소비자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, 소분·판매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방법·기준 등을 정립하기 위해 **소분·포장** 관련 **품질·안전성 확보 조건***으로 **실증특례를 의결**하였다.

* ①건강기능식품 소분·포장은 판매업소에서 구매자의 참관하에 실시하되, 최초 1회 판매업소(매장)에서 구매 후 동일 제품 정기구매는 매장 방문 및 대면 상담 없이 가능, ②의사·약사 또는 영양사 등의 '위생관리책임자', '건강상담자' 지정·운영, ③식약처가 제공하는 '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가이드라인'을 준수 등

□ (**기대 효과**) 이번 실증을 통해 **소비자에게 필요한 성분을 개인맞춤형으로 소분·판매**함으로써, **과다 섭취** 및 **오남용**이 **방지**되는 등 **합리적 건강기능식품 소비**가 가능하고,

○ 소분·포장을 통해 1일 또는 1회 분량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섭취할 수 있어 **소비자의 편의성**도 **증대**될 것으로 보인다.

○ 또한, **최초 1회 오프라인 판매업소***에서 **구매**한 이후, **동일 제품**은 매장 방문이나 대면 상담 없이 **온라인으로 정기 구매가 가능**하게 되어, **'비대면(Non-Contact) 서비스' 활성화**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.

* 아모레퍼시픽 6개 매장, 풀무원건강생활 5개 매장, 한국암웨이 5개 매장, 한국허벌라이프 5개 매장, 빅썸 100개 연계 약국, 코스맥스엔비티 5개 매장, 모노랩스 6개 매장·연계약국 20개

〔안건8〕 수소저장용 고압 · 대용량 복합재료 용기 : 실증특례

□ (**신청 내용**) ㈜엔케이는 '**수소저장용 고압·대용량 복합재료 용기**'에 대한 **실증특례를 신청**하였다.

○ 이번 실증은 **국내 최초로 1700L 수소저장용 복합용기**를 탑재한 **수소 튜브트레일러**를 이용하여, **수소 충전·운송·하역**을 통해 고압·대용량 복합용기에 대한 **안전성을 검증**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.

* 실증구역은 ①충남의 SPG케미칼(서산)과 홍성군 내포 수소충전소, ②울산의 SPG케미칼(울산)과 서부산 수소충전소 중 결정 예정

< 고압·대용량 복합용기 탑재 수소튜브트레일러 >



□ (**현행 규제**)「**고압가스 안전관리법**」의 **안전기준**(KGS AC419)에 따르면, 수소저장용 복합재료용기(Type4) 검사 기준 등이 **내용적 450L 이하로 규정**되어 있어 신청제품 활용에 제약이 있다.

□ (**심의 결과**)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**환경 규제 및 정책**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**환경친화적인 수소차 보급을 확산하기** 위해서는,

○ **수소충전소 1일 처리용량 확대**(400→500kg)와 **수소운송의 경제성 확보를 통해 수소가격 인하를 유도**해야 하므로, 일정 **안전조치를 준수**하는 조건으로, 해당 **용기의 실증특례가 필요**하다고 판단하였다.

* ①국제 안전기준(EN, ISO, ADR) 준수, ②복합용기 및 튜브트레일러 일일 안전점검, ③「도로법」 및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준수 등 기존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체계 적용

□ (**기대 효과**) **운송 용량**이 기존 제품 대비 **약 80% 증가**되어 **대규모 수소운송이 가능**해짐에 따라, 1kg당 운송비가 **약 50%가 절감***될 것으로 기대되며,

* 1회 운송량(340kg→634kg)의 운송비는 220,000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 시, 수소 1kg당 운송비는 647원/kg → 347/kg으로 약 50% 절감

○ **수소 충전가격**의 **경제성 확보로 대규모 수소운송 기반**이 마련됨에 따라, **수소경제 활성화**를 위한 **교두보가 확보**될 전망이다.

* 추후 실증결과를 고려하여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의 안전기준 마련 예정

○ 한편, 지난 4.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국무총리 주재)에서 산업부가 발표한 '**친환경차(수소·전기차)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**'에 튜브트레일러 압력 기준 제한 완화가 **주요 규제 개선 과제로 제시**된 바, **동 실증과 시너지를 통해 제도 정비를 보다 앞당길 것**으로 보인다.

[안건9]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: 실증특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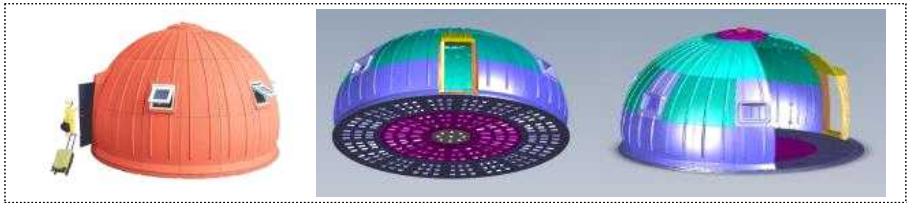
□ (**신청 내용**) ㈜돔아일랜드는 '**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**'에 대한 **규제특례**를 **신청**하였다.

○ 신청기업은 **친환경적인 소재**(합성수지 HDPE*재질)로 만든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를 개발하여 **야영장에 판매**하고자 한다.

* 고밀도 폴리에틸렌(High Density Polyethylene), 화학성분 배출이 없는 친환경 합성수지

○ 해당 제품은 기존 천막 텐트 대비 **자연 재해** 및 **화재에 강하고 유지보수가 용이**하여, 눈·비·바람 등 **기상조건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도 안락한 야영**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한 야영시설이다.

< 글램핑용 돔텐트 구조 및 형태 >



□ (**현행 규제**)「**관광진흥법**」에 따르면, **야영 시설은 주재료가 천막**이어야 하며, 안전·위생 기준도 천막이 주재료인 경우로 설정되어 있어, **합성수지(HDPE) 재질의 해당 제품**은 **야영장 시설로 등록이 제한**된다.

□ (**심의 결과**)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**소비자 선택권 확대** 및 **야영장 활성화** 등 **긍정적 효과가 기대**되며 소재의 안전 기준 마련, 숙박업 시장과 형평성 등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**실증특례를 의결**하였다.

* 年 최대 200개로 판매 한정, 복층구조 제한 및 동별 면적 24m^2 이하 등 조건

□ (**기대 효과**) **보다 안전**하고 **쾌적한 시설**에서 **새로운 캠핑 체험을 가능**하게 하는 등 **소비자 선택권이 확대**되는 한편,

* 고가의 캠핑카(카라반), 글램핑용 텐트 대비 20~66% 수준의 판매 가격, 내구성이 약한 기존 텐트 대비 소모품 교체가 적다는 이점에 따라, 야영장 이용객은 저렴한 가격에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공간에서 야영할 수 있는 가능성

○ 새로운 유형의 제품 출시를 앞당기고 캠핑에 대한 **수요층을 넓혀, 야영산업**과 **캠핑문화 활성화**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

○ 또한, 해당 제품은 **완전히 재활용이 가능**하고 **반영구적으로 사용**할 수 있는 재질이므로, 기존 천막 텐트 대비 폐기물 배출 감소에 따른 **환경 개선 효과도 일부 기대**된다.

[안건10]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 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: 실증특례

□ (**신청 내용**) **부동산포스**는 '**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을 이용한 양방향 디지털 사이니지**'에 대한 **실증특례를 신청**하였다.

○ 신청기업은 부동산 창문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**다수의 종이 광고물을 한 대의 모니터**(디지털광고물)로 **대체**하고, **매물관리 프로그램**(ERP)**을 연동***하여 **부동산 매물 정보를 표시하는**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.

* 매물관리 프로그램과 자동 연동되어 매물정보 변화의 실시간 반영 및 표시·광고

< 디지털 사이니지 구현 방식 >



(디지털 사이니지 구현화면)



(QR코드 문자 예약·문의 구현 화면)

□ (**현행 규제**)「옥외광고물법 시행령」 및 시·도 조례에 따라 디지털 광고물은 **주거지역에서의 설치가 제한**되어 있다.

□ (**심의 결과**)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**디지털 광고물의 광고효과와 주변에 미치는 영향** 등의 검증 필요성을 인정하여, **서울·경기 지역에 400개** 및 **실증집중구역 2개*** 범위 등 조건**으로 **실증특례를 의결**하였다.

* 실증집중구역 2곳(경기 안양시, 서울 강동구) 내의 설치개수(최대 100개)

** 타사광고와 동영상 광고 금지 및 건물 1층에 한정, 빛 공해 기준 준수, 새벽시간 전원 차단, 본 광고물 제외 창문 이용 광고물(천, 종이, 비닐) 제거에 적극 협조 등

□ (**기대 효과**) 최근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**디지털광고물의 효과**와 **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** 등을 종합 판단할 수 있는 **충분한 실증 데이터(Track Record)가 확보**될 것으로 보인다.

* 실증 결과는 창문 이용 광고물 정비 등 옥외광고물법 규정(행안부) 개정에 활용 예정

○ 또한, 기존 종이 광고물을 디지털광고물로 대체하여, **광고물 난립을 감소시켜 도시 미관이 개선**될 것으로 예상되며,

○ 매물관리 프로그램(ERP)과 연동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, **허위 매물 광고를 방지**하여 **시민들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**으로 기대된다.

* 최근 다양한 부동산 중개서비스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 하면서 허위매물, 과장매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

[안건11] 정수 · 냉수 · 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판매 : 임시허가

□ (**신청 내용**) ㈜삼성전자는 '**정수·냉수·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판매**'에 대한 **임시허가를 신청**하였다.

○ 해당 제품은 **기존 일체형 정수기**와 달리 **정수, 냉수, 냉온수**로 **기능별 키트로 분리**하여, **고객 편의**에 따라 **업그레이드가 가능**하게 제작된 **정수기**로,

○ 정수기만 사용하던 소비자가 **냉·온수 기능이 필요**하게 되면, 간편하게 **냉·온수 키트만 추가 구매**하여 냉·온수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다.

* 기존 일체형 정수기는 냉·온수 기능 필요시 냉·온수 정수기를 새롭게 구매할 필요

□ (**현행 규제**)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정수기는 **안전확인 신고 후**, 냉수기 및 냉온수기는 **안전인증 취득 후**에 판매가 가능하나,

* 전기정수기(KC 10007), 전기냉수기(KC 60335-2-24), 전기냉온수기(KC 60335-2-34)

○ 개별 키트를 결합하여 **'정수기, 냉수기, 냉온수기'**로 안전확인 신고(정수기) 및 안전인증(냉수기, 냉온수기)을 진행한 이후, **키트 단위**로 **개별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해 불확실성**이 있었다.

□ (**심의 결과**)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**소비자의 개별적인 선호와 특성**을 **반영**할 수 있는 **업그레이드형 제품이 증가**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,

○ 개별 키트를 결합한 형태로 기존 안전기준을 만족한다면, **키트형 제품의 개별적인 판매**를 허용하는 것으로 **임시허가를 의결**하였다.

□ (**기대 효과**) **키트 조합**을 통해 **필요 시** 손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여 **편의성이 높아지고, 합리적인 소비**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.

○ 또한, 일체형 제품을 중복 구매하는 것에 비해 **경제적 이점도 일부** 있으며, **불필요한 제품교체**를 **방지**하여 **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**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* 신청기업에 따르면, '정수기 이용자 중 44%'가 냉·온수 등 기능 추가를 위해 기존 제품을 버리고 신규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파악

[안건12] 소수력 발전 시스템 : 적극행정

□ (**신청 내용**) ㈜동해기연은 산업부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*한 '**소수력용 발전장치'를 신재생에너지설비로** 인정하고,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내 소수력을 포함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.

* 생활용수를 이용하여 10KW급(태양광 패널 51m²에서 생산되는 전력량 수준)의 전력 생산

□ (**현행 규제**)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,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·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등의 제도를 운영중이나 **소수력**은 **제도 적용**을 위한 **세부기준이 부재**하여 관련 **시장진출에 애로**가 있다.

□ (**심의 결과**)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**적정기준 충족**시 **소수력**이 **신재생에너지원**으로 **인정**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, **소수력 발전 시스템**의 **확산 지원**을 위해 관련 **제도**를 **보완**키로 하였다.

○ (**기준**)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**발전설비**에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**추가적인 에너지원**(펌프 등)이 **없는** 경우에 한하여,

< 상수도 라인 적용 예시 >



- **시험인증기관**의 **시험성적서**를 갖추고 「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」 상 수력설비 시공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.

○ (**제도보완**) 산업부는 소수력 발전 시스템에 대한 **경제성, 타당성 검증 후**에, **설치 보조금의 적정단가,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** 관련 단위에너지생산량, 보정계수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,

- 국토부는 **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·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**시 필요한 인증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.

□ (**기대 효과**) 소수력 발전 시스템이 **신재생에너지**로 **인정**받을 수 있는 경우를 **명확히 하고** 관련 **제도**를 **보완**키로 함으로써, **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**할 수 있게 되었다.

【 향후 계획 】

□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"**최근 코로나19**로 인해 **실물 경제** 및 **금융 부문의 불확실성**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, **기업의 시장 진출 의욕을 고취**시키고 **투자가 원활하게 추진**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**규제 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**하다"고 강조하면서,

○ "금년에는 **규제 샌드박스가 경제활력 제고에 모멘텀**이 되고, **기업들과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**을 줄 수 있도록 **'지속가능한 성과 확산체계'**를 만들어 나가겠다"고 다짐하였다.

□ 특히, **"**비상경제회의,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단체의 정책제언 등을 통해 **기업이 제기한 신산업 규제를 Top-Down 과제로 검토하여 샌드박스로 신속히 해소**하는 동시에",

○ "코로나19가 야기한 생산·소비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, **스마트 의료, 원격 교육, 온라인 비즈니스**(유통·물류 등) 등 **비대면(Non-contact)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**하겠다"고 밝혔다.

□ 이어서, "**오늘 첫걸음을 내딛는 '규제수리(Repair) 워킹그룹***'은 성공적인 실증과제에 대한 **법령 개선 자문안을 마련**하여, **규제부처에 서비스하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서 관계부처와 소통을 강화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"**고 언급하였다.

* 교수·로펌·기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 중심 구성 → 성공적인 실증과제 대해 법령 등 규제개선(안) 마련 → 규제부처 전달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홍석민 사무관(☎ 044-203-451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 **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개요**

□ 개최 배경

○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, 제10조의5에 따라,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에 대해 **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·의결**

□ 개최 개요

○ (**일 시**) 4.27(월), 14:00～16:00

○ (**장 소**) **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**

○ (**참석자**) 산업부 장관, 정부위원, 민간위원, 관계부처 등 30여명

□ 회의 내용

○ 실증특례 · 임시허가 **심의안건 11건, 보고안건 1건** 등 **총 12건***

* 심의 : (실증특례) '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·판매' 등 10건
(임시허가) '정수·냉수·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' 등 1건
보고 : (적극행정) '소수력발전 시스템' 1건

□ 세부 일정

○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전에 규제특례심의위 민간위원 신규 위촉*, 규제수리 워킹그룹 발족** 관련 **위촉장 수여 행사 진행 예정**

* 민간위원 : 이학성(LS일레트릭 전력시험기술원 원장), 박현섭(티로보틱스 본부장)
** 워킹그룹 위촉장 수여 : 이종영 교수(워킹그룹 위원장), 권소담 변호사(태평양), 오수연 변호사(광장), 장준영 변호사(세종), 이소영 변호사(지평, 수여식 불참), 고주현 변호사(KIAT)

구 분	시 간	내 용	비 고
위촉장 수여식	14:00~14:20('20)	▪ 위촉장수여 - 규제특례심의위 위원 2명 - 규제수리 워킹그룹 5명	산업부 장관
심의 위원회	14:20~14:23('3)	▪ 성원 보고	산업기술정책과장
	14:23~14:30('7)	▪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	산업부 장관
	14:30~15:50('80)	▪ 안건 심의(실증특례 10건, 임시허가 1건)	-
	15:50~15:55('5)	▪ 안건 보고(적극행정 1건)	산업기술정책과장
	15:55~16:00('5)	▪ 마무리 말씀 및 폐회	산업부 장관